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술검증업무 위탁 시 필요한 접수과제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일부개정 훈령안

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0호 중 “위임할”을 “위탁할”로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과제부여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여,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장에 따른 과제명은 신청대상 제품명으로 하고, 과제번호의 분류기호는 "KTSOA-yyynn"로 하며,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KTSOA : 대한민국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(Korean TSOA)
2. yy :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
3. nn :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

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기술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 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, 당해 기술검증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품형식승인 (Korean TSOA)

2. yy :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

3. nn :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

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기술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 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, 당해 기술검증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